

**2025년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3.



I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

□ 감사목적

-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 부문) 및 지역농협의 기관운영·예산집행·업무추진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 기여

□ 감가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5. 7. 14. ~ 7. 25, 2025. 10. 13. ~ 10. 24.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대상

-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 부문), 지역농업협동조합

□ 감사내용

- 최근 3년간 기관 운영 및 업무 전반

Ⅱ 감사 결과

1	농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인삼) 추진 및 정산 소홀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부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은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 증정행사용 수삼을 도매시장(금산) 평균 단가의 약 3배 이상인 자체 구매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하고,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함(세금계산서에 수량 및 단가 미기입)에도 자료 보완 요청 등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함

농협경제지주

보조금 지급 요청 시 증빙자료 등이 미비함에도 보완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확인을 소홀히 한 □□부에 “부서주의” 요구 (부서주의)

농산물마케팅지원(농산물소비촉진지원-인삼) 사업 추진 시 국고 낭비의 오해가 없도록 수삼 등 구입 가격 및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개선 방안 마련 요구 (개선)

2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추진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더라도 제안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계약을 하여야 하나,

-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 계약을 하였고,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서 제안서 적합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음

농협경제지주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통보)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500만 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하나,
- 보조금으로 500만 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총 8건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 등록함

농협경제지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통보)

4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4년 예산 185백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2025년에 60백만 원을 확충 편성하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협경제지주

계약기간이 2개 회계년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감사원 계약가이드에 따라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입찰 후 계약은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등 계약 업무 체계 개선 요구 (개선)

5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계획에 따라 도서지역 물류 효율화를 위해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나,
- 현재 세 권역(경상권, 수도권, 전라권)의 물류센터를 선정·운영하면서 해상물류비(간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권 물류센터로 물량의 대부분이 출하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됨

농협경제지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사업이 최적의 통합 거점 운영 검토를 통해 권역별 물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방안 마련 요구 (통보)

6	부적합 농산물 사후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농식품안전관리준칙」 및 ‘농식품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농협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납품되지 않도록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잔류농약검사 결과 초과검출 농산물에 대해 1회 적발은 1개월 출하중지, 2차 적발은 3개월 출하 중지, 3차 적발은 취급 중단으로 다소 실효성 없는 사후조치로 관리함

농협경제지주

잔류농약 초과검출된 농산물이 출하·판매 되지 않도록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 요구 (통보)

7	성범죄·음주운전 처벌 기준 마련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目目부

-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징계 기준을 마련 또는 보완하여야 하나,
- 성범죄·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별도의 내용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자체 적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

농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검토하여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관련 기준과 자체 적발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개선)

8	두류계약재배사업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두류계약재배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매년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위약농가 리스트 관리 및 제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해당연도 적립금 조성·운용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위약금 징수 적정 여부만 확인하고 위약농가 리스트 관리 및 제재조치 이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고 있었으며, 적립금 조성·운용실적 보고 또한 미흡했음

농협경제지주

두류계약재배사업의 관리 실태 조사 및 적립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9	인삼계열화사업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인삼계열화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우수 사업주체에 대한 포상과 부진 사업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우수 사업주체에 대한 표창 수여만 2022년도에 1회 실시하였으며 부진 사업주체에 대한 별도 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농협경제지주

인삼계열화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0	임원 및 간부직원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주의	관계기관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1,5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1명 두어야 하고,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으나,

- 상임이사 1명 이상 운용 대상 농협이고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로부터 2020년부터 3차례 상임이사 미도입에 대해 감사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임이사를 도입하지 않고,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초과하여 운영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과 다르게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간부직원으로 1명의 전무를 임명하여 운용한 ○○농협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관련 법 및 정관에 맞게 상임이사제 도입 및 간부직원 운용 요구 (시정)

11	약정조합원 및 공선출하회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약정조합원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규정과 계획에 따라 약정조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공선출하회 운영 시 조합은 회원 농업인과 협의하여 생산자조직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합과 회원 농업인 간 매년 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약정조합원의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선출하회 운영하면서 생산자조직 운영규약을 제정하지 않았고 조합과 회원 농업인 간 출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농협

관련 규정에 따라 약정조합원 및 공선출하회가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개선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2	약정조합원 제도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약정조합원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규정과 계획에 따라 약정조합원을 우대해야 하나,
- 이용고배당 사업 관련 이사회 의결 시 약정조합원 우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약정조합원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농협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약정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대 내용을 포함하고, 약정조합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요구 (통보)

13	제규정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르면 제규정이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내부규범으로서 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을 말하며, 농협중앙회의 규정례를 참고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보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은 조합규정례와 다른 직제를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마땅히 마련해야 하는 제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회에서 시달된 규정례 모범안·예를 자체 제규정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았음
- ◆◆농협은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10% 미만임에도 정관에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립을 하지 않고 있었음

농협중앙회 ○○농협 ☆☆농협 ♡♡농협 ◆◆농협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규정의 모범안·예를 바탕으로 조합의 실정에 맞게 내부 규범 마련 요구 (개선)

회원 조합이 실정에 맞는 제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원조합이 자체 제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도 요구 (통보)

14	임원 보수 지급 및 직원 급여 업무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농협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및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비상임 조합장의 관리성과금은 월기본실비의 4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특별성과금은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통상임금의 최대 1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 ♡♡농협은 2023년도 비상임 조합장의 관리성과금을 월기본실비의 약 468%를 지급하여 4,190천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 특별성과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급여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채 보수지급 업무를 함

♀♀농협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에 맞지 않게 초과 지급한 비상임 조합장의 관리성과금 4,190천 원 회수 조치 요구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보수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방안 마련 요구 (통보)

15	직원 급여 규정 미비 등 업무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농협

- 「직원급여규정(모범안)」에 따르면 직원의 보수 중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별도의 별표1~별표4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 「직원급여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모범안의 별표(기본급표 등) 일체를 총회의 의결이나 조합장 등의 결재 절차 없이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급여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급여 지급 시 적용하고 있음

○○농협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직원급여규정(모범안)」을 바탕으로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를 하도록 요구 (개선)

16	수탁판매 업무 추진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조합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수탁판매사업을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나,
- 물자(판매품 등)를 인수할 때 증빙서를 수수(授受)하지 않았고, 수탁판매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 및 절차 없이 개별 계산하였으며, 출하자에게 위탁판매품출하요청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수탁판매사업 업무추진 미흡함

♀♀농협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판매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통보)

17	직원 채용 서류 관리 미흡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농협

- 「채용준칙」 제17조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기간까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나,
- 최근 3년(2022~2025년 9월)간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 건 중 채용권자가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4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았음

○○농협

농협중앙회에서 시달한 규정의 모범안을 바탕으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자체규정을 마련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요구 (주의)

18	직원 순환배치 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인사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해 지사무소가 있는 경우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사무소 간 순환배치 하여야 하며, 순환배치 대상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불시 특명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직원이 동일 업무를 2년 이상 하거나,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특명감사 역시 실시하지 않았음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조합 실정에 맞는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동일 업무를 2년 이상,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배치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9	회의 의사록 작성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정관」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 등 5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간(2022~2025년 9월말) 실시한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사록에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정기총회 4건, 이사회 3건, 임시총회 6건) 되었으며,
- ☞☞농협은 2025년에 개최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전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정기총회 1건, 이사회 9건, 임시 이사회 1건) 되었음

○○농협, ☞☞농협

총회 및 이사회에서 작성한 의사록에 대하여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실시 요구 (통보)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간(2022~2025. 10월말 현재) 5건의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 ◇◇농협은 1건의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계상함

* 직·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3.11%를 계상해야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2.93%를 계상

◇◇농협, ◆◆농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진척에 따른 집행 및 정산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 등 실시 요구 (개선)

21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작성 및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농협, ◆◆농협

- ‘토양개량제 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가 Agrix에서 출력한 공급신청서에 농가 서명과 살포량을 기재하여야 하나,
- 별도의 양식에 공급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원 대상 농가에 토양개량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았음

◇◇농협, ◆◆농협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작성 시 읍·면·동 담당자가 Agrix에서 출력한 공급신청서에 지원 농가의 서명과 살포량을 작성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 (개선)

22	상속 지분 환급시 증빙서류 징구 미흡		
처분요구	개선(2)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방안(금융감독원)’에 따라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2024.7.19.)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필수 서류로 징구하고 제적등본은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농협중앙회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예)」에는 조합원 사망으로 지분 환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협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징구하고 있었고,

◆◆농협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징구하고 있었음

농협중앙회, ◇◇농협, ◆◆농협

업무방법 제2장 제5조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지분 환급 시 징구하는 상속인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방안'에 맞춰 개정하도록 요구 (개선)

조합원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지분 환급 시 상속인으로부터 징구하는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방안'에 맞춰 징구하도록 요구 (개선)

23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농협경리실무」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적절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급회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회의서를 건 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

☆☆농협

업무추진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요구 (통보)

24	조합원 가입 신청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농협

- 「정관」 및 '조합원·준조합원 관리 업무방법'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가입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한 뒤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 조합원 가입신청서, 출자 비과세 제변경 신고서, 출자증권 수령증 등

관련 서류를 일부 미비하게 작성함

- 「정관」에 따르면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 준조합원 가입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가입금은 1천 원으로 정해 가입 신청을 받았음

☆☆농협

「정관」에 준조합원 가입금 등에 대해 조합의 규정에 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 요구 (개선)

조합원 가입 신청 시 「정관」 및 ‘조합원·준조합원 관리 업무방법’에 따라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의 철저한 확인 등에 대해 담당자 교육 하도록 요구 (통보)

25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이 200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0백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1인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 ☆☆농협은 2025년 4월 경화장 신축공사 계약 시 추정가격이 235백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고, 2025년 외부회계감사 선임을 위해 10백만 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음
 - ◆◆농협은 2022년에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 2건을 추진 하며 이를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함

☆☆농협, ◆◆농협

계약 체결 시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실시 요구 (통보)

26	조합 사업 미이용 조합원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농협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명할 수 있으나,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주요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 및 사업 이용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1년 이상 조합 미이용: 23명(1.7%),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 : 134명(9.8%)

☞☞농협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개선)

27	농축산경영자금(융자금)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농축산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소요경영비를 심사하여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소요경영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영농 확인서류에 기재된 영농규모(작목·면적, 축종·두수 등)를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하고 있으나,

- 농축산경영자금 소요경영비 심사 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을 영농 확인서류와 다르게 입력하여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농협, ♣♣농협

부당하게 취급된 농축산경영자금 초과취급액(♣♣농협 9,000천 원, ♣♣농협 4,234천 원)에 대해 검사일('25.10.24.)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 (시정)

28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금)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농촌주택개량자금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연도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사업대상주택, 사업실적확인서, 융자한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융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융자금을 산출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 전액을 부당하게 취급하였고,
- ◆◆농협은 다가구주택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였음

○○농협, ☆☆농협, ◆◆농협

부당하게 취급된 농축산경영자금(○○농협 200,000천 원, ☆☆농협 140,000천 원, ◆◆농협 29,400천 원)에 대하여 검사일('25.10.17.)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 (시정)

29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금)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 '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농지 구입(임차) 및 시설 설치(임차), 기타자금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 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취급 시 사업실적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자의 기타자금 대출신청 금액 전액을 대출 취급함

◆◆농협

부당하게 취급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초과취급액 11,068천 원에 대해 검사일('25.10.17.)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 (시정)

3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 및 지원자금 회수 통보 하여야 하나,
- 귀농인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지분 증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농협

사업시행기관에 부정수급 발생사유를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의 회신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통보)

3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후계농업경영인이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 ◎◎농협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육성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대상이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유 통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농협은 후계농업경영인이 타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보수를 받고 있어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대상이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유 통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농협, ☆☆농협

사업시행기관에 부정수급 발생사유를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의 회신 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통보)

32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려는 경우 변경된 해에 시행한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증여 및 소유권이전(재산분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농협, ♡♡농협, ◆◆농협

사업시행기관에 부정수급 발생사유를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의 회신 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통보)

33	과실수급안정사업 적립금 운용·관리 미흡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농협

- '과실수급안정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적립된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사용용도는 손실보전, 수급조절, 교육·홍보, 마케팅 강화·판매 촉진, 지도 지원, 기타 등 정해진 사용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시 교육 계획, 교육 결과보고, 참석인원, 업무 협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지출 목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교육·홍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시 지출 목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농협경제지주, ○○농협

적립된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지출 시 지출 목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과실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을 개정하도록 요구 (권고)

유통손실보전자금 사용 시 지출 목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요구 (통보)

34	기업여신 정기신용평가 미실시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신용평가 담당자는 기존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평가 유효기간 내에서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 ○○농협은 채무자 3건에 대해, ☆☆농협은 채무자 12건에 대해, ☺☺농협은 채무자 3건에 대해, ◆◆농협은 채무자 2건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평가 미실시 하였음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여신 정기신용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 (시정)

35	회수불능채권 상각절차 이행 소홀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채무관련자에 대한 파산절차·경매·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승인을 받아 채권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손실처리 하여야 하나,
- ☆☆농협은 회수불능채권 4건에 대해, ♠♠농협은 회수불능채권 2건에 대해, ◇◇농협은 회수불능채권 3건에 대해, ♀♀농협은 회수불능채권 6건에 대해, ◆◆농협은 회수불능채권 3건에 대해 상각절차 미이행 하였음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채권의 상각절차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 (시정)

36	특수채권 소멸시효 관리 소홀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특수채권은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일을 관리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포기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특수채권 3건에 대해 소멸시효 관리를 소홀히 함

♠♠농협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특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 및 도래되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채권포기 절차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 (시정)

37	채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소홀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채권관리위원회는 본점에 설치하고 적이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하나,
- 채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소홀히 함

○○농협, ◇◇농협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채권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요구 (통보)

38	시재금 보유한도 관리 소홀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자금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사무소 현금시재 보유한도와 창구직원의 현금보유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모출납 직원의 현금보유한도는 해당 사무소 현금시재 보유한도 이하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 모출납 직원의 현금보유한도가 사무소 현금시재 보유한도를 초과(34회) 하였음

◆◆농협

「자금관리업무방법」에 따라 모출납 직원의 현금보유한도가 사무소 현금시재 보유한도 이하로 관리되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통보)

39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소홀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매매 거래 실행 이후에는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정정은 시장질서 및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절대 불가하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정 후 정당거래 시에는 당초 거래 회차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 ○○농협은 외국환 정정업무 2건에 대해, ☆☆농협은 외국환 정정업무 2건에 대해, ♡♡농협은 외국환 정정업무 2건에 대해, ◇◇농협은 외국환 정정업무 2건에 대해 관리 소홀히 함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시 환율회차 적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통보)

40	외부자본을 활용한 농축협 전기차충전기 무상 설치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관계기관	에너지사업부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보유 시설은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함
- 외부자본을 활용한 농축협 전기차충전기 무상 설치 사업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농축협 78개소에 140대(급속 41, 완속 99)를 무상 설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농협경제지주

농축협의 경영부담을 줄이면서 농촌지역의 충전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신성장동력사업인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

[통보(모범사례)]

41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관계기관	☞☞농협

-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 및 ☞☞농협 관할 지역 내 복지시설 부족에 따라 노인 은퇴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함
-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부양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여함

농협중앙회, ☞☞농협

관할 지역의 고령 농업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 [통보(모범사례)]